

학 점 포 기 원

소 속 학 과		전 공		등 록 학 기	
성 명		학 번		연 락 처	

수강과목명	수강학기	학점	성적	담당교수	사유

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

제23조의4(학점포기)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.

1.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 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
2. 수료예정자가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미개설된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

위와 같은 사유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 _____ (인)

학과장: _____ (인)

공 학 대 학 원 장 귀 하